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금번 예산안은 2015년 04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당초 미부담사업,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5,14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66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337백만원이 증액된 328,594백만원, 특별회계는 13,331백만원이 증액되어 66,547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910백만원, 지방교부세 11,006백만원, 조정교부금 3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072백만원, 지방채 10,000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04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78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756백만원 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36,358백만원, 재무활동 9,829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50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3,331백만원 임.

Ⅲ. 검토내용

1. 총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395,141,065	100	335,473,015	59,668,050	17.79	
일 반 회 계	328,593,983	83.16	282,256,944	46,337,039	16.4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901,639	6.56	21,634,199	4,267,440	19.73	
기타 특별회계	소 계	40,645,443	10.29	31,581,872	9,063,571	28.70
	주택사업	1,552	0.00	1,552	0	0.00
	기반시설부담금	103,158	0.03	103,158	0	0.00
	농공단지조성	743,664	0.19	743,664	0	0.00
	의료보호기금	723,540	0.18	725,591	△2,051	△0.28
	발전소주변지역	45,071	0.01	45,071	0	0.00
	수질개선	30,023,848	7.60	29,417,836	606,012	2.06
	공유재산관리	9,004,610	2.28	545,000	8,459,610	1552.22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 총 395,141,065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7.79%인 59,668,050천원이 증액 되었고,
- 이중 일반회계는 328,593,983천원으로 46,337,039천원(16.42%)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66,547,082천원으로 13,331,011천원(25.05%)이 증액되었음.
- 전체회계별 예산규모 면에서는 일반회계가 83.16%, 특별회계는 16.84%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328,593,983	100	282,256,944	46,337,039	16.42
자 체 수 입	소 계	32,011,670	9.74	31,101,670	910,000	2.93
	지방세	23,126,094	7.04	23,126,094	0	0.00
	세외수입	8,885,576	2.70	7,975,576	910,000	11.41
의 존 수 입	소 계	296,582,313	90.26	251,155,274	45,427,039	18.09
	지방교부세	161,006,000	49.00	150,000,000	11,006,000	7.34
	조정교부금	6,300,000	1.92	6,000,000	300,000	5.00
	국도비보조금	99,700,809	30.34	91,628,674	8,072,135	8.81
	지방채	10,000,000	3.04	0	10,000,000	순증
	보전수입등	19,575,504	5.96	3,526,600	16,048,904	455.08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8,593,983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42%인 46,337,03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91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의존수입은 45,427,039천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006,000천원이, 국도비보조금은 8,072,135천원이, 지방채 순증 10,000,000천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6,048,904천원이 증가 하였음.

○ 이를 세목별로 보면

① 지방세수입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23,126,094	100	23,126,094	0	0.00
보 통 세	22,676,094	98.05	22,676,094	0	0.00
과년도수입	450,000	1.95	450,000	0	0.00

○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음.

② 세외수입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8,885,576	100	7,975,576	910,000	11.41
경 상 적 세외수입	소 계	5,883,711	66.22	5,883,711	0	0.00
	재산임대수입	725,480	8.16	725,480	0	0.00
	사용료수입	762,024	8.58	762,024	0	0.00
	수수료수입	757,466	8.52	757,466	0	0.00
	사업수입	2,004,000	22.55	2,004,000	0	0.00
	징수교부금수입	1,014,741	11.42	1,014,741	0	0.00
	이자수입	620,000	6.98	620,000	0	0.00
임 시 적 세외수입	소 계	3,001,865	33.78	2,091,865	910,000	43.50
	부담금	1,012,000	11.39	232,000	780,000	336.21
	과징금 및 과태료	189,865	2.14	189,865	0	0.00
	기타수입	1,550,000	17.44	1,420,000	130,000	9.15
	지난연도수입	250,000	2.81	250,000	0	0.00

③ 지방교부세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161,006,000	100	150,000,000	11,006,000	7.34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11,006,000천원 증가 하였음.

④ 조정교부금등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6,300,000	100	6,000,000	300,000	5.00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2%를 차지하고 있음.

⑤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99,700,809	100	91,628,674	8,072,135	8.81
국 고	79,379,221	79.62	74,840,792	4,538,429	6.06
도 비	20,321,588	20.38	16,787,882	3,533,706	21.05

- 보조금 99,700,809천원은 당초예산 대비 8.81% 증액된 것으로
 - 이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4,538,429천원이 증액된 79,379,221천원 이고,
 -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3,533,706천원이 증액된 20,321,588천원임.

□ 세출예산

①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328,593,983	100	282,256,944	46,337,039	16.42
정책사업비	257,809,710	78.46	221,451,332	36,358,378	16.42
재무활동비	24,528,828	7.46	14,700,030	9,828,798	66.86
행정운영경비	46,255,445	14.08	46,105,582	149,863	0.33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42%인 46,337,039천원이 증가한 328,593,983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책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16.42%인 36,358,378천원이 증액된 257,809,710천원이고,
 - 재무활동비는 당초예산 대비 66.86%인 9,828,798천원이 증액된 24,528,828천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0.33%인 149,863천원이 증액된 46,255,445천원임.

② 기능별 구분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328,593,983	100	282,256,944	46,337,039	16.42
일반공공행정	21,162,017	6.44	16,578,612	4,583,405	27.65
공공질서및안전	7,762,090	2.36	6,424,793	1,337,297	20.81
교 육	2,564,024	0.78	2,485,524	78,500	3.16
문화및관광	56,814,433	17.29	43,707,793	13,106,640	29.99
환경보호	24,246,137	7.38	18,476,321	5,769,816	31.23
사회복지	46,004,650	14.00	44,407,035	1,597,615	3.60
보 건	4,924,158	1.50	4,022,355	901,803	22.42
농림해양수산	61,178,224	18.62	52,966,807	8,211,417	15.50
산업중소기업	1,550,562	0.47	1,130,901	419,661	37.11
수송및교통	15,726,728	4.79	9,292,128	6,434,600	69.25
국토및지역개발	36,917,770	11.24	32,533,161	4,384,609	13.48
예비비	3,487,745	1.06	4,125,932	△638,187	△15.47
기 타	46,255,445	14.08	46,105,582	149,863	0.33

- 당초예산 대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4.65% 증액된 21,162,017천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81%가 증액된 7,762,090천원,
 - 교육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16% 증액된 2,564,024천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99%가 증액된 56,814,433천원,
 - 환경보호분야는 31.23%가 증액된 24,246,137천원,
 - 사회복지분야는 3.60%가 증액된 46,004,650천원,
 - 보건분야는 22.42%가 증액된 4,924,158천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50%가 증액된 61,178,224천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7.11%가 증액된 1,550,562천원,
 - 수송및교통분야는 69.25%가 증액된 15,726,728천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3.48%가 증액된 36,917,770천원,
 - 예비비는 15.47%가 감액된 3,487,745천원,
 - 기타 각 부서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당초예산 대비 0.33%가 증액된 46,255,445천원이 편성되었음.

③ 성질별 구분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예 산 액	%		증 감 액	%
합 계	328,593,983	100	282,256,944	46,337,039	16.42
인 건 비	40,828,142	12.43	39,708,939	1,119,203	2.82
물 건 비	23,893,766	7.27	21,811,664	2,082,102	9.55
경상이전	87,127,490	26.52	77,791,418	9,336,072	12.00
자본지출	148,418,981	45.17	123,809,930	24,609,051	19.88
보전재원	2,116,000	0.64	2,116,000	0	0.00
내부거래	22,336,460	6.80	12,893,061	9,443,399	73.24
예비비및기타	3,873,144	1.18	4,125,932	△252,788	△6.13

○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82% 증액된 40,828,142천원,
-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9.55% 증액된 23,893,766천원,
- 경상이전비는 당초예산 대비 12% 증액된 87,127,490천원,
- 자본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19.88% 증액된 148,418,981천원,
- 보전재원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대비 73.24% 증액된 22,336,460천원,
- 예비비 및 기타는 6.13% 감액된 3,873,144천원 임.

3.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		증감액	%	
합 계	66,547,082	100	53,216,071	13,331,011	25.05	
상수도공기업	25,901,639	38.92	21,634,199	4,267,440	19.73	
기타	소 계	40,645,443	61.08	31,581,872	9,063,571	28.70
	주택사업	1,552	0.00	1,552	0	0.00
	기반시설부담금	103,158	0.25	103,158	0	0.00
	농공단지조성	743,664	1.83	743,664	0	0.00
	의료보호기금	723,540	1.78	725,591	-2,051	-0.28
	발전소주변지역	45,071	0.11	45,071	0	0.00
	수질개선	30,023,848	73.87	29,417,836	606,012	2.06
	공유재산관리	9,004,610	22.15	545,000	8,459,610	1552.22

□ 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6,547,08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05%인 13,331,011천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9.73%인 4,267,440천원이 증액된 25,901,639천원이고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51천원이 감액된 723,540천원,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06,012천원이 증액된 30,023,848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8,459,610천원이 증액된 9,004,610천원이며,
 - 이외 주택사업, 농공단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

□ 세출예산

○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25.05%인 13,331,011천원이 증액된66,547,082천원으로 회계별로 주요세출을 살펴보면,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 (구)대관령휴게소 지방상수도 확충공사에 300,000천원 증액,
- 방림(계촌)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70,000천원 증액,
-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구축사업에 2,100,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 진료비 예탁금 2,051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 봉평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설치사업에 164,000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933,428천원을 증액 하였음.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 평창읍 이곡리(폐천부지) 군유지집단화사업에 364,610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평창읍 중리(노람뜰) 군유지 집단화사업에 2,555,000천원을 증액,
- 도암중학교 및 연접사유재산 토지매입비 5,755,000천원을 증액 하였음.

4. 종합검토 의견

-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95,14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35,473백만원보다 59,668백만원(17.79%)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328,59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337백만원(16.42%)이,
 - 특별회계는 66,54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31백만원(25.05%)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 당초예산과 대비할 때 지방세 세입의 변동은 없었으며,
 - 세외수입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부담금(정선군), 대화면장관사 전세금, 평창군금고(농협) 장학사업,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기화1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 조정교부금은 대화면궁도장(태화정)정비사업과 평창향교 보수사업에 따른 교부금,
 - 보조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 지방채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군비 부담에 따른 채무발행,
 - 보전수입은 2014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구성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수송 및 교통(6,434백만원, 69.25%), 산업중소기업(419백만원, 37.11%), 환경보호(5,769백만원, 31.23%), 문화 및 관광(13,106백만원, 29.99%), 일반 및 공공행정(4,583백만원, 27.65%), 공공질서 및 안전(1,337백만원, 20.81%), 농림해양수산(8,211백만원, 15.50%)등 전분야에 걸쳐서 대폭으로 증가한 반면,
- 예비비(△638백만원, △15.47%) 분야는 감소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3,331백만원(25.05%) 증액된 66,547백만원으로,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8,459,610백만원, 1552.22%)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군유지집단화사업과, 올림픽과 연계한 도암중학교 및 연접사유재산 매입,
- 수질개선특별회계(606백만원, 2.06%)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하수도 사용료)과 신축건물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세출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며,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8,459백만원, 19.73%)의 세입은 내부거래와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세출은 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과 지방 상수도확충사업임.

○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 201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30,661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당초예산에 3,672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20,361백만원을 편성 하였음.
- 2014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가결산)

(단위 : 백만원)

순세계잉여금 (A)=(B+C)-D	초과세입금 (B)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C)				보조금잔액 (D)
			소계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30,661	12,802	100	19,614	17,676	1,725	213	1,855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 당해 연도 사업 투자는 당초예산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추경 예산의 편성은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당초 미부담사업,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 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음.
- 세출예산중 신규사업을 보면 "평창"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기준 재정립 용역 등 51개 사업("별첨1")에 3,401백만원으로,
-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업착수가 늦어져 사업추진의 부실과 사업의 이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우선 순위의 충분한 검토 및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당초예산 편성 이후 주변여건 및 사업계획 변동으로 사업비변동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벗어나 재정운영의 무계획성과 방만한 예산 운영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만큼 향후,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올림픽 준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복지·균형발전 등 자체사업 수요증가를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순수군비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 사업중 국·도비 부담금이 아닌 순수군비 증액사업이 부서별 다수 발견되어 지방채 발행 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 금번 1회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지방채 발행시 채무상환 계획의 수립, 재정의 긴축운용 방안, 지방채 발행액 축소 여부, 기 발행 지방채의 우선 대환을 통한 이자 지급액 감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공유지 집단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의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와 건전한 군 재정 운영을 위한 평창군용역과제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평창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며,
- 총19개 용역사업(붙임2“)중 기술(공사설계)용역 2개사업을 제외한 17개 용역사업이 학술용역으로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세심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